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안 제20조제3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나. 시·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시 과거 과태료 처분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원”을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2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을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로,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위험물운반자”로,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을 “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6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부과된 처분에 한하여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에 포

함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100 200 500 5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100 200 500 5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	법 제39조제1항제5호	100 200

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 500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2	100 2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100 200 500 5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6호	100 200 500 500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39조 제1항제7호	150 300 500
차.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자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자 3)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
카.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8호	150 300 500
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1항제9호	150 300 5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0일
2. 제8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호, 별표 9 제2호: 2021년 10월 2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 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 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 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이 되는 탱크 등)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 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 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 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 한다.		3. ----- 제1호에 따른 -- -----. ----- ----- -----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 · 지반검사, 충수 · 수압검사, 용 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 ----- -----		

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생략)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생략)

③ ~ ⑤ (생략)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법 제18조제3항-----
-----이란

-----.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
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
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
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
한을 제외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 10. (생략)

<신설>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
는 재개 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
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
기점검 결과의 수리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 -----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4. 법 제20조제3항----- -----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 -----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위험물운반자 ----- ----- 안전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82